

앞서가는 공제, 신뢰받는 공제

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

수신 조합원 제위

(경유)

참조

제목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일부개정(안)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-925(2023.2.7.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적재물공제 약관 일부개정(안) 부분승인 알림)와 관련입니다.

3. 위와 관련하여 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일부가 개정되어, 불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: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개정 주요사항 1부. "끝"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
서울지부장



담당 박순희

업무차장 최병웅

지부장 결재 02/13
김도환

시행 서울 제00470호 (2023.02.13)

종결 ()

우 05510서 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신천동, 교통회관, 9층) / <https://www.truck.or.kr>

전화 02-3433-8000 팩스 02-3433-8088 / nasaranee@truck.or.kr /

붙임)

적재물배상 책임공제 약관 개정 주요사항

1. 개정 취지

- ☐ 적재물공제 약관 중 일부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개정
※ 2022년도 제14회 서면 운영위원회(2022. 12. 13.) 원안 의결, 국토교통부 개정 승인(2023. 2. 7.)

2. 적재물약관 개정 주요사항

현 행	개정내용
◦ 제30조 및 제37조(보상하는 손해) 1. 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	◦ 제30조 및 제37조(보상하는 손해) 1. 수탁화물 가액 내에서 조합원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
◦ 제32조 및 제39조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 12. 화물의 포장불완전으로 생긴 손해, 수탁화물을 결박하지 않았거나 고정하지 않았음으로써 생긴 손해 등	◦ 제32조 및 제39조(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) 12. 화물의 포장불완전(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을 포함)으로 생긴 손해

보통약관 제32조 제12호 및 제39조 제12호

- ☐ (개정내용) 적재물 면책사유에서 “포장불완전”에 관한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장불완전 면책 문구를 명확하게 관련내용 보완 (손해보험사 약관과 동일)

- 이번 개정을 통해 ‘화물의 포장불완전’에 단서조항(해당 적재화물 자체의 포장불완전 및 적재화물의 결박 부적정 등)을 추가하여
→ 포장불완전에서 결박부실, 포장부실 등에 대한 **면책약관 해석 정비(명확화)**

※ 안심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결박부실, 포장부실에 대해서는 보상 가능하나, 결박하지 않거나 적재물 자체의 적정한 포장을 하지 않은 경우 면책

3. 유의 사항

- 개정안 제32조 및 제39조는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 제12호(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)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면책사항임

4. 시행 일자

- ☐ ‘23. 2. 7. 책임 개시일부터 적용